

# 「경북 관광기업 청년 인재 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도내 관광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경북 관광기업 청년 인재 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 1 개요

- 사업명 : 경북 청년 인재 채용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 4. 20.(월) ~ 2026.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참여대상 : 관광 관련 아이템으로 경북도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
- 채용대상 :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 의거
- 지원내용 :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인턴 3명 지원(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절차

참여기업 신청	참여기업 선정	근로계약 체결	급여 지급 (기업→인재)	지급 신청 (기업→센터)	지원금 지급 (센터→기업)
신청 서류 제출 및 접수	⇒ 적격여부 검토 후 개별 통보	⇒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자체 채용	⇒ 매월 급여 지급	⇒ 급여 지급 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 증빙서류 검토 후 지급

## 2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기업별 청년인재 최대 3명 지원(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사업장 규모	5인 이하	6인 이상~10인 이하	11인 이상~	비고
청년인재 수	1명	2명	3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대표자 포함) 기준

※ 1인 기업의 경우 채용 후 대표자, 인턴 모두 4대보험 직장 가입 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근로계약일로부터 최대3개월
- 지원금액 : 근무기간별(1~3개월) 단계적 급여 지원 \***[표]** 참고
- 지원금 : 기업에서 급여 선지급 후 근무기간에 따른 지원금 매월 지급

근무기간	서류 제출일	지원금액	비고	지원금 지급일
5/1~5/31	~ 6/7	1,000,000원	약 50%	6월 중
6/1~6/30	~ 7/7	1,300,000원	약 60%	7월 중
7/1~7/31	~ 8/7	1,700,000원	약 80%	8월 중
<b>합계</b>		<b>최대 400만원</b>		

※ '26년 최저임금(2,156,880원)의 약 50~80%

○ 부가지원(필수이행사항)

- 참여 기업과 근로자의 의무 준수 사항으로 지원기간 내 이행하여야 함

구분	지원내용	이행조건
참여 기업	- 5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혹은 인사담당자)는 「경북관광기업 컨설팅」 참여를 통한 인사노무경영 애로사항 점검 및 상담 기회 제공	지원기간 내 1회 이상
청년 인재	- 고용된 청년 인재는 근무기간 내 「경북형 관광인재 양성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기회 제공	지원기간 내 교육 수료

※ 선정기업 대상 별도 공지 예정(6~7월 중 실시)

○ 지원제외 : 전년도 수혜자(동일기업-동일직원) 또는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 후 1년 이내 재채용된 자

○ 중도퇴사 및 대체채용

- 중도 퇴사자(자발적 퇴사) 발생 시 센터에 즉시 통보 및 증빙서류 제출
- 잔여 지원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대체 인건비 지원 가능
- 만근 전 퇴사할 경우 해당 청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단,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대체 채용이 이루어져야 함

##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는 관광기업

## ① 경상북도에 소재한 관광 사업체 및 관광스타트업

(단, 사업화 자금으로 인건비 지원 받는 기업은 제외)

## ②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및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준\*에 의거 등록·허가·지정·신고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북도 내 기업

## ③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서 관광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기업)

[\*관광기업] 관광진흥법 분류 및 관광산업 특수 분류 내 속한 업종

구분	업종
관광 진흥법 기준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광객이용시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li> </ul> </li> <li>· <b>관광숙박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li> </ul> </li> <li>· <b>관광편의시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식당업, 관광 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유통업은 지원 제외</li> </ul> </li> <li>· <b>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li> </ul> </li> <li>· <b>국제회의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li> </ul> </li> <li>· <b>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li> </ul> </li> </ul>
관광산업 특수분류 기준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광쇼핑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점,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 인증 쇼핑업</li> </ul> </li> <li>· <b>관광운수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철도운송업, 시외버스운송업, 전세버스운송업, 자동차 임대업, 관광수상 운송업, 관광 항공 운송업</li> </ul> </li> <li>· <b>관광숙박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휴양림업,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호텔, 관광 인증 모텔업, 민박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li> </ul> </li> <li>· <b>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li> </ul> </li> <li>· <b>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운영업, 사적지관리운영업, 식물원동물원 운영업, 자연공원운영 기타 관광지운영업, 농어촌체험 및 생태관광업, 경주장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운영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운영</li> </ul> </li> </ul>

## ○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해당 시 신청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

<b>참 여 기 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자체, 유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 등)의 일자리·인건비 지원 관련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경우</li> <li>-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항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li> <li>- 인턴 채용 예정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li> <li>- 신청일 기준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 제한이 있는 사업체</li> <li>- 금융기관, 국·지방세, 4대 보험료 등 체납,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사업체</li> <li>-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체</li> <li>-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체</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li> <li>-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li> </ul>
<b>청 년 인 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자</li> <li>- 본 지원금(3개월분) 수혜 한 인턴 지원자</li> <li>- 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li> <li>- 근로자가 근무 예정 사업장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li> <li>-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li> </ul>

## ○ 지원 중단 대상

- 선정 이후 아래 항목 중 1개라도 확인될 시 고의·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즉시 지원 중단
-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센터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수혜기간 내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자격이 소멸된 사업체
- 정기 및 수시 점검 진행 시 허위 근무가 적발된 경우
- 참여자 의무준수사항(교육, 행사 참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기간 중 부당한 업무,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 근로자의 중도퇴사, 해고, 휴직 등으로 기업의 급여 지급이 중단될 경우
-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최저임금을 미달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동일 인원에 대해 타 기관 일자리 지원금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4

## 청년 인재 채용 요건

- 채용대상 : 경북 거주 미취업 청년(만19 ~ 39세)
  - ※ 근로계약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경북도내인 청년에 한해 채용 및 지원
- 채용기간 : 선정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
  - 채용이 늦어질 경우 즉시 선정 취소 및 후순위 기업에 채용 기회 제공
  - 선정통보 이후 신규 채용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
  - 26.11.1. 이전 채용인원(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에 한하여 지원
- 채용방법 : 기업별 근로요건에 따른 자체 구인 후 증빙서류 제출

구 분	주요내용
자체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별 근로 요건에 따른 자체 구인 공고(개별면접 및 자체 채용 진행)</li> <li>· 채용 명단 센터 통보 및 증빙서류 제출</li> </ul>
채용행사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행사 참여(참가기업 ↔ 구직자 매칭 혹은 현장 면접 진행)</li> <li>※ 선정기업은 행사 운영 시 참여 필수</li> <li>· 현장 채용 시 채용 명단 센터 통보 및 증빙</li> </ul>

- 채용요건
  - 경북도내 거주 청년
  -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주 4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직무 및 법정교육 필수
    -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 4대 보험료 및 기타 제수당 기업 부담
  - 채용 형태(기간의 정함이 있는/없는)에 따른 기본급 이상 급여 지급
    - 최저임금(월 2,156,880원) 이상 혹은 생활임금(월 2,518,241원) 이상 급여 지급
  - 관광산업 실무와 직접 연관된 업무 수행해야 함

※ 지원 불가능 직무

1.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또는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2.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3. 식당 · 커피점 · 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接客 · 판매
4. 건설 · 생산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5.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어 청년이 수행할 수 없는 일자리
6. 기타 주관기관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 5

## 신청 및 지원 절차

## ○ 절차별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참여기업 신청	① [서식1] 참가 신청서(기업용) ②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③ [서식3] 서약서(기업용) ④ 사업자등록증 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선정 기반 적격 여부 검토 ※ 선정기업 개별 '선정통보' ※ 선정기업은 관련 행사 운영에 적극 참여, 협조 必
2	참여청년 적격여부 검토신청	① [서식4] 청년인재 채용 확인서 ②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청년용) ③ [서식6] 서약서(청년용) ④ [서식7]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 서약서(청년용) ⑤ 주민등록등본 ⑥ 근로계약서(안) <b>자체양식 사용 가능</b> ⑦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청년) ⑧ 가족관계증명서(청년,상세)	※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채용 ※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개별 통보 ※ 부적격자의 경우 지원불가
3	근로계약 체결 확인	① 근로계약서 <b>기업/청년 서명 후 제출</b>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b>가입 후 제출</b>	※ 검토완료 후 근로계약 체결 ※ 11.1. 이전까지 채용 완료
4	지원금 신청	① [서식8] 지원금 신청서 ② [서식9] 출근부 <b>청년 서명 후 제출</b> ③ [서식10] 일일 업무 일지 ④ 사업자등록증 ⑤ 기업 통장 사본 ⑥ 급여이체확인증 ⑦ 급여지급명세서 <b>자체양식 사용 가능</b> ⑧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b>급여일 이후 발급분</b>	※ 급여 지급 후 7일 이내 제출 ※ 매월 제출
해 당 시	중도 퇴사	① [서식11] 퇴사확인서 ② [서식12] 대체채용 계획서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b>상실신고 확인용</b>	
	대체 채용	① 2. 참여청년 신청 서류 8종 ① [서식13] 지원대상 채용자 변동 확인서 ② 3. 근로계약 체결 확인 서류 2종	※ 적격여부 검토 결과 개별 통보 ※ 검토완료 후 근로계약 체결 ※ 11.1. 이전까지 채용 완료
	정규직 전환	① [서식14] 정규직 전환 명단 통보서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 <b>자체양식 사용 가능</b>	※ 전환 여부 확인용

## ○ 신청방법 : 신청서류(.pdf) 작성 후 압축(.zip)하여 이메일 제출

- (이 메 일) gbtourbiz@naver.com

- (메일제목) 경북 청년인재 지원사업 신청/지급요청(0개월)\_기업명

- (파 일 명) 제출서류명\_기업명/청년명

## 6

## 유의사항

- 제출서류 기재 착오,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회는 후순위 기업에 부여됨
  -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 선정 이후 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청년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
  - 지원 현황 및 실근무 현황 검토를 위해 불시에 근무지 현장 방문 점검, 근로자 및 관계자 면담 등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변조 시 즉시 선정 취소함
  - 기업 및 청년의 위법사항 적발, 지원금 관련하여 부정·부당하게 수령 및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참여기업과 청년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있음
  - 공고문 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2026 경북 관광기업 청년 인재 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 문 의 처 :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담당자(☎054-745-7008)